

2017학년도 1학기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전임교원 채용

문화유산 특수목적 고등교육기관인 한국전통문화대학교에서 우수인재를 육성할 우수하고 역량 있는 교수님을 모십니다.

2016. 9. 20.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총장

1. 채용분야 및 인원

대학원	학과	채용분야	인원	담당교과목	비고
문화유산 융합대학원 (전문대학원)	수리복원 학과	문화재 무기소재 (무기재료학)	1명	- 무기소재 재료학 - 무기소재 역학 - 무기소재 물성평가 기술	
	문화유산 산업학과 ('17 신설)	정보처리기술 및 디지털프로그래밍	1명	- 정보처리기술(Information Computing Technology) - 디지털 콘텐츠 프로그래밍 (Digital Contents Programming) - 컴퓨터 그래픽스이론 및 응용 (Computer Graphics Theory and Application)	

※ 문화재 무기소재 : 무기소재(석재, 벽돌 등)에 의한 문화재를 보존하고 응용 및 활용하기 위한 영역임.

※ 담당교과목은 학과 사정상 변동될 수 있음

2. 지원자격

가.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 4의 규정에 의한 임용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나.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자격기준에 부합하는 자

다. 박사학위 소지자에 한함

라. 접수마감일 기준 최근 3년간 연구실적물(학위논문은 제외)이 200% 이상인 자

※ 연구실적 인정범위 및 비율은 “심사연구실적 인정범위 및 환산율” 표에 의함(별첨 참조)

3. 임용조건

- 가. 최종합격자는 교육공무원임용령 제5조의2 및 본교 인사규정에 의하여 임용직급, 임용기간, 급여, 근무조건 등을 조건으로 하여 계약제로 임용함
- 나. 임용직급은 조교수로 임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교육경력 및 연구실적에 따라 부교수이상 임용 가능
- 다. 4년제 대학(교)에서 교수 또는 부교수로 일정기간 재직한 경우, 연구 또는 교육경력이 특히 우수한 자는 각각 동일 직급으로 임용 가능
 - ※ 교육 및 연구경력 인정은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전임교원 자격 인정 심사지침」에 따름
 - ※ 교육부의 국립대학 교원 성과급적 연봉제 운영계획에 따라 2015년부터 연봉제 실시

4. 제출서류

- 가. 지원서 및 연구실적 목록 및 요약서(본교 소정 양식 전자파일 별도 제출) ----- 각 1부
- 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본교 소정 양식 전자파일 별도 제출)----- 1부
- 다. 학위 및 성적증명서(학사, 석사, 박사) ----- 각 1부
 - ※ 외국 박사학위소지자는 한국연구재단 박사학위신고 신고필증 함께 제출
 - ※ 영어 등 각종 외국어로 작성된 증명서는 한글 번역문(응모자 날인)을 첨부하여 제출하고, 증명서 하단에 발급기관의 주소, 전화, 팩스, 이메일 등을 기재
- 라. 경력증명서(지원서에 기재한 전체경력) ----- 각 1부
 - ※ 모든 경력증명서에는 근무부서, 직책, 담당업무, 근무기간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 마. 추천서(2명 이상) ----- 각 1부
- 바. 자기소개서(주요 연구업적과 이력 등, 전자파일 별도 제출) ----- 1부
- 사. 교육 및 연구계획서(A4용지 4장 이내, 강의 가능과목과 중·단기 연구계획 및 목표 등 포함 전자파일 별도 제출) ----- 1부
- 아. 최종학위 논문 ----- 6부
- 자. 심사대상 연구실적물----- 각 6부(원본 1부, 사본 5부)

* “심사대상 연구실적물”은 접수마감일 기준 3년 이내(2013.10.8~2016.10.7)에 발표·게재·등록된 논문·저서·특허로써 **【별첨4(심사연구실적 인정범위 및 환산율)】**에 따라 인정 환산한 연구실적물을 말합니다.

* 학술지 게재 논문인 경우 “원본” 1부 제출, “사본”은 해당 부분 복사 제출

- 1) 연구실적목록(별첨2)은 본인의 연구실적 전체를 작성하되, **㉠최종학위 논문과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3년 이내에 발표한 ㉡심사 연구실적물(200~250% 내외)은 각 6부씩, ㉢기타 연구실적물은 1부씩만 제출**

- 2) 학술지 논문은 권(volume), 수록면(page)이 명시되어야 하고 online으로 사전 공개(preview 등) 된 논문일 경우에도 권과 수록면은 반드시 명시되어야 함.
- 3) online 논문(인쇄물로 출판되지 않고, web에만 출판되는 논문)의 경우는 권(volume)이 명시되어야 함.
- 4) 모든 심사대상 연구실적물은 인터넷(전산망)으로 조회할 수 있도록 연구실적물 표지 상단에 “인터넷 주소”를 기재하여 제출
- 5) 연구실적물은 국제저명(SCI, A&HCI, SSCI) · 전문학술지(등재) 및 국내전문학술지(등재 및 등재후보) 게재 논문만 제출 가능하고, 등재 확인이 가능한 증빙자료 제출
 - ※ 연구실적물 상 주저자 또는 교신저자임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 주저자 또는 교신저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해당 학술지를 발간한 기관에서 주저자 또는 교신저자임을 공식적으로 증명한 확인서 등)를 첨부하여야 하며, 이를 증명하지 않아 생긴 불이익은 지원자의 책임임.
- 6) 국제전문학술지 게재 논문의 인용지수는 논문 발표년도 JCR의 Impact Factor를 의미하며, 해당 논문 발표년도의 Impact Factor가 없는 경우에는 확인 가능한 가장 최근년도 Impact Factor를 적용하고, 지원자는 Impact Factor 확인이 가능한 증빙서류 제출(*미제출시 해당 연구실적물의 Impact Factor는 0점으로 처리)
- 7) 「연구실적목록」상의 순서대로 증빙물에 번호 기재 후 정렬하여 제출하고 연구실적물이 영어 이외의 제2외국어로 작성된 경우 국문 또는 영문요약본을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
- 8) 연구실적물은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발표된 것으로서 출판이 완료되어야만 연구실적물로 인정하며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출판 예정인 연구실적물은 인정하지 않음
 - ※ 발표일자는 연구실적물의 최종 출판(인쇄)된 연,월,일을 기재해야 합니다. 연구실적물에 일자가 표기되어 있지 않은 경우 증빙자료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월'까지만 표시 되어 있는 경우에는 표기된 해당 월의 1일에 출판된 것으로 간주하며, 연구실적물의 게재지, 게재일, 발표자가 확인이 안 될 경우 해당 연구실적물은 인정하지 않을 수 있음.)
- 9) 심사대상 기간의 연구실적물이라 하더라도 그 이전의 연구실적물과 중복될 경우 제출 할 수 없음

5. 서류제출방법

가. 접수기간 : '16. 10. 4.(화) ~ 10. 07.(금) 18:00

[근무시간 : 09:00 ~ 18:00, 점심시간(12:00~13:00) 및 공휴일 제외]

나. 접수방법 : 방문접수 또는 대리접수 * 우편물 접수는 무효처리

다. 접수처 :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교무과(전화 041-830-7162, Fax 041-830-7020)
(충남 부여군 규암면 백제문로 367)

6. 심사절차 및 기준

가. 서류심사 : 응모자격, 전임교원 자격, 제출서류 구비 여부 심사

나. 1차 심사 : 전공적부심사, 연구실적심사

1) 채용전공분야와의 전공적합성, 최종학위 논문 및 연구실적물의 수준 심사

2) 연구실적 구분 : 심사 연구실적, 기타 연구실적

3) 연구실적 유효기간 : 접수마감일 기준 3년 이내

4) 연구실적 범위 및 인정기준

○ **심사 연구실적**은 석·박사 논문 및 최종학위논문과 중복된 연구실적을 제외한 국내외 논문, 저서 등에서 **반드시 최근 3년 이내의 200~250% 내의 실적**으로 한정하여 지원자가 지정한 대표 업적이고 기타 연구실적은 최종 학위논문과 심사 연구실적을 제외한 나머지 업적임

※ 연구실적물 인정범위 : 최종학위논문, 국제저명·전문학술지(SCI, A&HCI, SSCI 및 SCIE, SCOPUS), 국내전문학술지(한국연구재단), 저서, 특허 **미등재지는 인정하지 않음.**

※ 국제저명·전문학술지(SCI, A&HCI, SSCI 및 SCIE, SCOPUS 등) 인정범위는 **【별첨4】** 참조

○ **지원자가 지정한 200~250% 내의 업적이란 지원자가 연구실적목록(양식)의 심사 연구실적 부분에 기재한 실적**을 말하며, 200%로 환산하여 평가

○ 대표논문을 지정할 때 연구실적물의 「%」 계산 등 서류 작성은 반드시 별첨의 “심사연구실적 인정범위 및 환산율(공통)표”를 참고하여 정확하게 작성, 제출하여야 함.

※ **편저, 역서, 학술대회 발표논문, 연구보고서 등은 연구실적물로 인정하지 않음**

다. 2차 심사 : 공개강의 심사(연구실적 심사 통과자에 한해 강의능력 심사)

라. 3차 심사 : 면접심사(공개강의 심사자에 한해 자질, 경력, 소양 등에 대한 심사)

7. 기타 유의사항

- 가. 전임교원 공개채용은 서류심사, 전공심사(전공적부, 연구실적), 공개강의, 면접 심사의 전형절차를 거쳐 최종합격자 발표
- 나. 공개강의 및 면접심사 대상자는 전공심사 완료 후 개별 통지함
- 다. 임용일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라. 해당분야에 심사단계별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도 있음
- 마. 미비된 서류는 접수하지 않으며, 접수 된 서류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별첨6] 양식 작성) 반환하며**, 기간 내 반환이 청구되지 않은 서류에 대해서는 절차에 따라 파기함. (***단, 연구실적물은 조건없이 임용일 이후 반환함.**)
- 바. 제출한 각종 증명서(학위, 성적, 경력), 연구실적물 등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 사. 제1순위 합격자가 임용 요건에 하자가 있어 합격이 취소되거나 임용되지 못한 경우 제2순위자가 합격 또는 임용되는 것은 아님.
- 자.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교 인사 관계 규정에 의하며, 해석상의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본교의 해석에 따름
- 차. 기타 상세한 사항은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교무과(전화 041-830-7162)로 문의 바람

- 별첨 : 1. 교수임용지원서(양식)
2. 연구실적 목록(양식)
3. 연구실적 요약서(양식)
4. 심사연구실적 인정범위 및 환산율
5.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 동의서(양식)
6. 채용서류 반환청구서(양식)

【 별 첨 1 】

교 수 입 용 지 원 서

접수 번호	※(기재하지 않음)
----------	------------

지원분야	학과				전공분야		사 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반명함판 (3.5cm×4.5cm)
성 명	한 글			한 자			
	영 문						
생년월일							
주 소							우편 번호
전화번호	자택			직 장			휴대전화
E-mail							
병 역	역 종			군 별			계 급
	복 무 기 간	. . . ~ . . .				미필(면제) 사유	
학 력 사 항							
구 분	기 간	학 교 명		학 과	세부전공	학 위 명	
고등학교							
학 사							
석 사							
박 사							
가 족 사 항							
관 계	성 명	생년월일	직 업	관 계	성 명	생년월일	직 업

【 별 첨 2 】

연구 실적 목록

지원분야	학과	전공
------	----	----

최종 학위 논문

학위명	취득대학	논문제목	취득년월일	지도교수명

심사 연구실적 **최근 3년 이내의 연구실적 200~250% 내외 기재*

연 번	구 분	발표년월일	논문제목	저자수 (제1저자/교신 저자여부)	게재지명	IF지수	비고
<예시>	논문	2016.0.0.	○○○○ 연구	0 (/)	○○○ (SCI, SCIE, SSCI)	0.00	135%
	합 계						210%

※ 구분은 연구실적 종류(논문, 저서 등)를 기재

기타 연구실적 **심사 연구실적을 제외한 최근 3년 이내의 실적만 기재*

연번	구분	발표년월일	논문제목	저자수 (제1저자/교신 저자여부)	게재지명	IF지수	비고
<예시>	논문	2014.0.0.	○○○○ 연구	0 (/)	○○○ (SCI, SCIE, SSCI)	0.00	135%
	합 계						

위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16년 월 일

지원자 :

(서명)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총장 귀하

【 별 첨 3 】

연구실적 요약서

지원분야	학과	전공
------	----	----

최종학위 논문

제 목	
개 요	

제 목	
개 요	

□ 심사 연구실적

제 목				구 분	논문, 저서 등 기재	
저 자 수 (제1저자/교신 저자여부)	계 재 지 명		발 표 년 월 일		인 용 지 수	
개 요						

제 목				구 분	논문, 저서 등 기재	
저 자 수 (제1저자/교신 저자여부)	계 재 지 명		발 표 년 월 일		인 용 지 수	
개 요						

제 목				구 분	논문, 저서 등 기재	
저 자 수 (제1저자/교신 저자여부)	계 재 지 명		발 표 년 월 일		인 용 지 수	
개 요						

□ 기타 연구실적

제 목					구 분	논문, 저서 등 기재	
저 자 수 (제1저자/교신 저자여부)	게재지명		발표년월일		인용지수		
개 요							

제 목					구 분	논문, 저서 등 기재	
저 자 수 (제1저자/교신 저자여부)	게재지명		발표년월일		인용지수		
개 요							

제 목					구 분	논문, 저서 등 기재	
저 자 수 (제1저자/교신 저자여부)	게재지명		발표년월일		인용지수		
개 요							

위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16년 월 일

지원자 :

(서명)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총장 귀하

【 별 첨 4 】

심사연구실적 인정범위 및 환산율

※ 편저, 역서, 학술대회 발표논문, 연구(용역)보고서 등은 연구실적물로 인정하지 않음

심사항목		연구실적물	기준율	환산율산출방법
연구실적	논문(건)	국제1급 학술지(SCI, SSCI, A&HCI) 국제2급 학술지(SCIE)	150%	기준율×인정환산율
		국제3급 학술지(SCOPUS) 기타 국제학술지	100%	
		국내1급 학술지	100%	
	저서(건)	전문학술서(단행본에 한함)	200%	기준율×인정환산율
		일반저서(단행본에 한함)	100%	
산업재산권(건)	국제특허 등록	150%	기준율×인정환산율	
	국내특허 등록	100%		
학술활동	연구·학술관련 수상	국제, 전국규모의 학술·문화· 예술상 수상(대통령표창 포함)	70%	기준율×인정환산율
	현상설계 수상	전국규모 이상 입상	50%	기준율×인정환산율
		지역규모 입상	30%	

<연구실적물 설명>

1. 공동연구업적의 인정환산율

- 1인(100%) / 2인(70%) / 3인(50%) / 4인 이상(30%)

다만, SCI, SSCI, A&HCI, SCIE에 등재된 학술지 논문의 주저자(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인 경우 해당 주저자에 대한 인정비율은 1인은 100%, 2인은 90%, 3인은 80%, 4인은 70%, 5인은 60%, 6인 이상은 50%

- 특허의 경우 명시 지분률이 있는 경우에는 명시 지분률을 인정환산율로 적용

2. 학술논문

- “국제1급 학술지”라 함은 SCI, SSCI, A&HCI에 등재된 학술지

- “국제2급 학술지”라 함은 국제1급 학술지 이외에 SCIE에 등재된 학술지

- “국제3급 학술지”라 함은 국제2급 이상 학술지에 속하지 않는 SCOPUS 등재 학술지

- “기타국제학술지”라 함은 국제 3급이상 학술지에 속하지 않은 학술지로 G7 국가 및 중국의 학술단체에서 발행한 심사제 학술지

- “국내1급 학술지”라 함은 한국연구재단의 등재학술지, 등재후보학술지

3. 저 서

- 전공과 관련된 200쪽 이상 분량으로 ISBN에 등록된 것으로 국내·외 출판사에서 출판된 저자 1인당 발행부수 500권 이상인 경우에 해당되며 입증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전문학술서”는 전공분야의 이론·학설을 정립하여 저술한 학술적 가치가 높은 학술서나 대학교 교육용 교재로 출판사에서 출판한 서적
- “일반저서”는 전문학술서 이외의 일반인을 위한 전문교양서적 또는 전공 관련 사전류 등으로 출판사에서 출판한 서적

4. 산업재산권

- “산업재산권”이라 함은 발명·상표·디자인 등의 산업재산권과 문학·음악·미술 작품 등에 관한 저작권 중 국제특허 및 국내특허를 의미함.

【 별 첨 6 】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청구인	성명	수험번호
주 소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반환청구서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 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총장 귀하

공지사항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